KSPAY 휴대폰결제 이용계약서

[실물/컨텐츠]

200 . .

주식회사 _____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KSPAY 휴대폰결제 이용계약서

상호명 기재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을”이라 한다)은 KSPAY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의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폰결제서비스”라 함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를 포함한다)를 입력함으로써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면, 고객의 전화요금청구서에 합산되어 청구 및 수납되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갑이 수취할 수 있도록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과금·청구·수납 대행서비스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3. “통신회사”라 함은 휴대폰결제서비스에 있어서 결제금액의 과금·청구·수납에 관계하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데이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또는 이들의 총칭을 말한다.
4. “휴대폰인증”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송되는 단문메시지(Short Message)에 의하여 고객이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부여 받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5. “결제금액”이라 함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서비스수수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결제금액으로부터 을이 취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서비스수수료율”이라 함은 결제금액에 대한 서비스수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실물”이라 함은 갑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콘텐츠”라 함은 갑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정산금액”이라 함은 갑의 고객으로부터 수납된 결제금액으로부터 서비스수수료를 차감한 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정산”이라 함은 일정한 주기마다 정산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정산대상월”이라 함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13. “거래취소”라 함은 휴대폰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내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4. “결제금액 환불”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갑의 고객에게 결제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휴대폰결제서비스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휴대폰결제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제 2 장 휴대폰결제서비스의 내용

제4조(휴대폰결제서비스의 내용 등)

① 을은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내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휴대폰결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2.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갑과 을의 시스템 간의 연동
3. 고객이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의 처리
4. 을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5. 휴대폰결제서비스에 관한 고객응대를 위한 고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갑은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2. 을에 대한 서비스수수료의 지급
3. 고객의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단할 수 있다.

1. 통신회사 또는 을의 시스템을 정기점검하는 등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단하여야 할 기술 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3.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통신회사·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한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미리 일시중단의 사유, 일시중단의 기간 등을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기타 적절한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을 택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중단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중단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일시중단의 사유, 일시중단의 기간 등을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기타 적절한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을 택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영업 및)

① 갑은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을은 제2항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무료체험 서비스 행사 등 허위, 과장광고, 기만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2.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3.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불법,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전항의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제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항 각 호 사유를 인지한 시점부터 을은 서면통보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2. 전항 각 호 사유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및 환불
3. 이 계약 13조항에 상관없이 을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의 보류
4. 전항 각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고객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피해액 환불뿐 아니라 추가손해배상

③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기만하여 실물 등록을 요청하고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물 거래에 인한 부당 이득의 즉시 반환
2. 실물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3. 을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비스수수료의 인상
4. 각 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이 계약의 즉시 해지

④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결제금액을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담당자 연락처 등록 및 갱신)

① 갑과 을은 휴대폰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업무시간 중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 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리자페이지 상에 갱신등록하거나 상대방 담당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갑과 을 상호 간의 원활한 업무연락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 있다.

제7조(서비스수수료율)

① 고객이 휴대폰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하는 갑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 : 실물 / 컨텐츠
2. 서비스수수료율(부가가치세 별도)
    가.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컨텐츠 : 결제금액의 7.5 %
    나.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실물 : 3.5 %

② 단, 휴대전화 결제서비스에 한하여 결제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인증번호에 대한 SMS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이때 청구되는 SMS비용은 결제 성공 건당 15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며, SMS비용은 정산금액에서 차감한다.

제8조(거래취소 등)

① 갑은 고객이 휴대폰결제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거래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을이 행하도록 갑이 요청한 경우
2. 갑과 을이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을이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인하여 을에게 직접 또는 이동통신사,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클레임이 접수된 경우, 을 또는 이동통신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 클레임 관련금액 상당액의 당월분 정산금 지급 보류
2. 동종의 클레임이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클레임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갑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 일시 정지
3. 고객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결제의 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클레임 관련 결제

내역 자료의 제공

④ 갑은 제1항의 클레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을이 행하는 문제 발생원인 규명, 클레임에 관한 결제의 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접수 고객 클레임 현황분석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이동통신사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 및 이동통신사는 그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정산)

① 을은 정산대상월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정산을 행한다. 다만, 통신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정산대상월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회사에 대해서는 그 통신회사의 정책에 따른다.

② 을은 정산대상월의 차익월부터 6개월 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그 정산대상월의 결제금액 중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지급한다. 다만, 그 정산대상월에 대한 각 결제서비스 별 정산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정산대상월의 정산금액에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지급함과 함께 서비스수수료(휴대전화 결제서비스의 경우 SMS비용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 상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결제금액 환불을 행한 때에는 을은 그 환불에 관한 결제가 이루어진 정산대상월 또는 이후의 정산대상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⑥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한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내역이 상이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간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을은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⑦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휴대폰결제 중재센터)

① 갑의 결제금액 규모 등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현황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휴대폰결제 중재센터(이하 “중재센터”라 한다)의 규약에서 정하는 소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중재센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센터의 운영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제8조의 정산금액에서 매월 차감하여 중재센터에 납부하며, 을은 그에 따른 증빙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11조(사이트 이용권한 제공)

①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의 시스템의 상호 연동 테스트를 위하여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로그인(login)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테스트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를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한 비밀준수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13조(잔여사무처리 의무)

이 계약의 종료·해지 이후라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지급의 범위 내에서는 갑과 을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 약 의 효 력

제1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계약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이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이 개시되어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이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에 관련 기관의 인허가 미비 등 법률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4. 갑에 대한 정산금액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평균 5만원 미만인 경우
5. 을과 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된 경우
6. 기타 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 타

제19조(유보사항)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계약 효력의 일부를 이룬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 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인) ← 인감날인

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6번지
제일빌딩 3층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대표이사 오 필 현